#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1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정연욱·강선영·김종양

박성훈 • 서지영 • 엄태영

주호영 · 김선교 · 이헌승

김소희 · 최은석 · 정동만

박수민 • 박정훈 • 김민전

박상웅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며,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

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함으로써 우리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20억원"으로, "벌금"을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억원"을 "20억원"으로, "벌금"을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제36조(벌칙) 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20억원-----벌금(위반행 다. 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 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 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 급)----.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 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 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2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 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 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 ~ 8 (생 략)
 ①배 이하의 벌금)---- 

 ③ ~ 8 (현행과 같음)